

러시아聯邦民法에 대한 比較法的 斷想

김민규*

<목 차>

- I. 들어가면서
- II. 러시아聯邦民法 小史
 - 1. 러시아聯邦民法 前史
 - 2. 러시아聯邦民法의 制定
- III. 러시아聯邦民法의 編制와 屬性
 - 1. 基本的 編制
 - 2. 基本的 屬性
- IV. 러시아聯邦民法의 特徵
 - 1. 編制上的 特徵
 - 2. 內容上的 特徵
 - 1) 所有權概念의 確立
 - 2) 契約自由의 原則과 國家의 介入
- V. 맺는 말

一. 들어가면서

Max Weber는, 『宗教社會學論集』의 序文에서, 研究者들이 比較文

* 부산외국어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2 比較法學 (第 14 輯)

化論을 고찰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시한다고 한다. 즉 '서양인들은 그들이 도대체 어떠한 사회적 상황에 처하여 있었기에, 西洋이라는 기반 위에서 普遍的인 意義와 妥當性을 지니는 문화현상을 창출하였을까.' 바꾸어 말하면, 非西洋文化圈에서는 왜 그와 같은 유럽적 또는 서양적 문화현상을 창출하지 못하였을까 라고 제기하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H. Berman은, 『法과 革命』에서 '法은 理性과 意思뿐만 아니라 感情, 直感 및 信義까지도 포섭하는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法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사회적 약속 (social commitment)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와 같은 지적은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문제의 제기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Max Weber의 지적이 「東西文化」에 대한 比較的 斷想이라 한다면, H. Berman의 지적은 「近代市民法的 秩序로부터 포스트모더니즘적 秩序로의 變遷」이라는 歷史的 斷想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을 法文化的 側面에 비추어 본다면, Max Weber의 지적이 比較(法)文化方法論의 橫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H. Berman의 지적은 比較(法)文化方法論의 縱軸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무릇 法文化에 대한 比較的 考察도, 위와 같은 橫軸과 縱軸을 함께 설정하여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러시아民法을 고찰함에 있어서도, 西洋法과 東洋法이라는 橫軸을 고려함과 동시에, 근대법과 후기근대법(포스트모더니즘法)이라는 縱軸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러시아聯邦의 法文化를 고찰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점은, 러시아聯邦이 지리적으로 西洋과 東洋이라는 橫的 兩面性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社會主義的 이데올로기에서 脫社會主義的 이데올로기(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에로의 변모를 겪고 있는 국가로서 이데올로기적 縱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比較(法)文化論의 側面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研究對象 國家라는 점이다.

그런데, 러시아聯邦이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국가이기 때문에, 法文

化的 側面에서도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필자의 言語 · 歷史 · 哲學 · 社會學的 研究基礎의 脆弱性 때문에, 橫軸과 縱軸이라는 총괄적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와 같은 현실적 한계는 필자 본인의 연구역량 부족에 기인한 것이므로, 러시아 法文化的 觀點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 이 논문에서는 序論的, 概觀的, 斷片的인 연구결과를 발표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이와 같이 러시아聯邦에 대한 學問的 基礎能力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聯邦民法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종래 計劃經濟體制에서 市場經濟體制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현상은 法體系의 무게 중심이 종래 行政法이나 刑法에서 民法으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러시아 民法의 軌跡(러시아 民法 小史)을 간단히 살펴보고, 현행 러시아聯邦民法(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의 編制와 屬性을 개관한 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근대민법체계에 비추어 러시아聯邦民法이 지니고 있는 特徵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러시아聯邦民法 小史

1. 러시아聯邦民法 前史

社會主義時代인 소비에트聯邦의 民法에 관한 基本的 法源으로서는 1962년부터 시행된 소비에트聯邦民事基本法과 1964년부터 시행된 러시아共和國民法典을 들 수 있다.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기에 들어와 1991년 소비에트聯邦民事基本法이 개정 되었지만, 施行을 목전에 앞두고 소비에트聯邦이 붕괴하였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991년의 소비에트聯邦民事基本法 改正法律은

4 比較法學 (第 14 輯)

1년이 경과한 1992년 7월 14일 러시아聯邦民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즉 1992년 7월 14일 러시아聯邦最高會議에서 '경제개혁수행기간 중의 민사법관계의 규제에 관한 결정'에서 「러시아聯邦의 새로운 민법이 제정되기까지, 러시아聯邦憲法 및 1990년 6월 12일 이후의 러시아聯邦法令에 반하지 않는 한, 本法(소비에트聯邦民事基本法)을 러시아聯邦民法으로 적용한다」는 결의에 따라, 새로이 생명력을 얻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2. 러시아聯邦民法의 制定

위와 같은 過渡期的 措置에 따라 러시아聯邦民法典 第1部 가 1994년 7월 8일 공포되고 1994년 10월 21일 議會에서 채택되어, 급기야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러시아聯邦民法典 第2部 는 1995년 12월 22일 의회에서 채택되어 1996년 1월 26일 공포되고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特定 國家의 民法典이 一部分씩 단계적으로 제정·공포·시행되는 예는 그다지 찾아보기 어려운 예이지만, 러시아聯邦의 경우는 제1부와 제2부가 제정됨으로써 계약법영역에 대해서는 거의 포섭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Ⅲ. 러시아聯邦民法典의 編制와 屬性

1. 基本的 編制

러시아聯邦民法의 기본적인 편제는 社會主義時代인 소비에트聯邦民事基本法의 편제와 거의 동일하다. 러시아聯邦의 경우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에로의 역사적 체제전환을 겪으면서 경제활동기구가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본법인 민법도 혁명적으로 변화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회주의시대인 소비에트聯邦도 전통적인 유럽 대륙법과 대단히 유사한 민법체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혁명적인 민법체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즉 사회주의시대에도 독일의 역사법학과 사비니의 흐름을 이어받은 판덕텐시스템 민법체계를 취하였기 때문에, 페레스트로이카期를 겪으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시대에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는 크게 다른 사회주의 경제체제 특유의 계획적이고 행정적인 규제관계를 매개로 삼는 법체계를 취하였기 때문에, 상품경제 및 화폐경제체제는 본질적인 요소로 자리잡지 못하였지만, 민법의 편제는 어디까지나 대륙법적 편제를 취하였다.

따라서 민법전의 재산법 편별의 구성도 총칙, 물권(소유권), 채권, 상속의 순으로 규정하여, 이른바 독일 및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大陸法的 編別體制를 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編別은 社會主義로부터 資本主義로 이행하는 전환기에 채택한 새로운 러시아聯邦民法典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주의시대의 민법전과 새로운 러시아聯邦民法典 사이에는 편별구성상에 혁명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基本的 屬性

사회주의체제하에서는 원래 법은 국가와 함께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법의 폐지를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였던 소비에트聯邦의 사회주의제도는, 당초 세계 어디에서도 그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자적인 법체제를 추구하였다. 1917년부터 1936년까지 소비에트 · 러시아는 慣習法, 帝國法, 西歐法 그리고 마르크스主義와 여러 가지 유형의 법을 경험하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1930년대 후반 스탈린시대에 들어와 결국 西歐法體系가 지니고 있는 기본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西歐法을 채용하게 된 이유는 西歐法이 지니는 요

소 중 ‘安定’과 ‘劃一的 管理’라는 요소를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당시 소비에트聯邦國家가 처하였던 현실을 고려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安定과 中央集權的인 規律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당시 소비에트聯邦國家는 혁신적인 법제도를 창출하기는 커녕, 사회주의는 결국 전통적 · 역사적으로 과거에 질질 끌려온 채 끝나 버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결국, 독자적인 소비에트法의 창출을 지향하되던 목표에서 점점 멀어져, 급기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다른 法制度로부터 借用하여 온 돌(石)이 뿌리를 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민법의 기능면에서는 대륙법의 전통을 가진 국가의 경우와는 전혀 달랐다. 소비에트聯邦民法典은, 單一의 民法典이면서 그 내부구성은 二元的 構造를 취하고 있었다. 즉, 전통적인 민법의 규율대상인 “市民相互間 그리고 市民과 國家組織(機關)間的 關係를 규율하는 部門”과 “國營企業의 相互關係 등을 규율하는 部門”이라는, 이른바 異質的인 두 部門이 물과 기름처럼 조화되지 아니한 채 하나의 法典 중에 병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前者의 경우는 사회주의사회에 있어서 그렇게 커다란 비중을 점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後者의 경우는 민법관계라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행정관계에 의하여 규율하여 왔기 때문에, 민법은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민법은 상품교환을 매개하는 규범형식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가 부정된 사회에서는 그 존재근거를 상실하기 마련이다. 또한 소비에트聯邦의 경우는 資本主義國家의 경우와 비교할 때 법의 역할에 있어서도 전혀 달랐다. 즉 前者는 全體的 法社會를 규율하기 위한 法이었음에 비하여, 後者는 部分的 法社會를 규율하기 위한 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비에트聯邦民法典이 두 가지의 異質的인 法體制를 동시에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질적인 의미에서 민사관계를 규율대상으로 삼는 고유의 民法領域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현재는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였기 때문

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주의시대와 같은 내용의 민법 내지는 민법체제로서는 사회를 규율할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적 필요성에 직면하여 러시아聯邦民法典에서도 編別構成上的 새로움을 찾을 수는 있다. 예컨대, 소비에트聯邦法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契約總則」規定이 러시아聯邦民法典에 새로이 규정되게 되었다. 또한 內容面에서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반영하였던 조문이 삭제되거나 감축된 현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資本主義社會에서 발달한 첨단 의 거래유형을 포용한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사회주의의 발전단계에 관한 규정이나 소유권에 관한 일반규정, 코트호즈에 관한 규정 등은 전자의 예라 할 것이고, 그 반대로 새로운 전형계약으로서 리스계약·팩토링계약·프랜차이즈계약 등의 현대적인 계약유형에 관한 조항들도 폭넓게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소비에트聯邦國家에서 러시아聯邦國家로 國家的 主體는 변하였다 하더라도 民法典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그 編制 및 屬性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커다란 변모를 엿볼 수 있다.

四. 러시아聯邦民法의 特徵

1. 編制上的 特徵

1) 編 制

러시아聯邦民法典은, 다음과 같은 편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총칙

· 민법의 기본원칙, 권리와 의무(법률관계), 권리와 의무의 발생근거(법률요건), 인(자연인과 법인)·조합과 회사, 비영리조직, 권리의 객체

8 比較法學 (第 14 輯)

(유형재산과 무형재산), 계약과 대리, 기간과 소멸시효 등.

제2편 소유권과 기타 물권

· 소유권의 내용(점유, 사용, 수익할 권능),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의 소멸, 공동소유, 토지소유권, 주거가옥 소유권, 영업지배권, 물권적 청구권 등.

제3편 채권법 총칙

· 채권의 개념, 채권채무의 당사자, 채무의 이행,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방법,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이전, 채무불이행책임, 계약법 통칙(계약의 개념, 기한과 조건, 계약의 종료, 계약의 변경과 취소) 등.

제4편 채무의 유형

· 매매(일반매매, 소매, 물품공급, 국가수요에 대한 물품공급, 도급, 에너지공급, 부동산매매, 기업매매 등).

· 기타(교환, 증여, 연금과 생활보호, 리스, 주택임대, 무상사용-사용대차, 계약-계약통칙, 소비자계약, 건축계약, 설계 및 연구용역수행 계약, 국가수요에 대한 수주계약 등).

2) 編制上의 特徵

① 民商統一法的 構造를 지향하고 있다.

② 法人의 章에서 非營利法人과 營利法人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③ 所有權概念의 確立에 주력한 나머지 用益物權과 擔保物權에 관한 규정은 대단히 미흡하다. 用益物權에 해당하는 권리는 賃貸借에서, 그리고 擔保物權에 해당하는 권리는 履行의 擔保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所有權의 保護를 증시한 결과, 物權的 請求權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⑤ 年金과 生活保護 등의 社會保障的 要素가 民法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社會保障法과 혼재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최근 資本主義民法이 지향하고 社會保障型 民法으로서의 새로운 傾向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⑥ 國家需要에 대한 物品供給契約과 設計 및 研究用役遂行契約 그리고 國家需要에 대한 受注契約 등을 민법에서 규정함으로써 國家契約的 契約類型이 민법에 포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통적인 의미의 契約法理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⑦ 契約의 概念 및 基本原則이 통일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散在되어 있다.

⑧ 리스契約 등 최신의 계약유형도 典型契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內容上的 特徵

1) 所有權概念의 確立

(1) 『私有』概念의 復活 前史

1991년 12월 소비에트聯邦이 해체됨으로써 소비에트 사회주의는 붕괴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사회주의를 지탱하여 온 社會主義的 所有制度가 파탄을 맞이하여, 오랫동안 부정되어 온 『私有』概念이 부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私有』概念의 재생은 일시에 부활 · 확립된 것은 아니다. 1985년 고르바초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개혁은, 당초에는 사회주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社會主義像」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단계에서 사실상 사회주의제도를 용인하는 듯한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사회주의의 원리와 타협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과도기적 개념과 원리가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이론적인 무리와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굴절된 과정을 거쳐 「私有」概念은 재생되어 왔던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期가 시작되기 전 소비에트聯邦의 所有法制 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소비에트聯邦의 경제시스템의 기초는 한마디로 「社會主義的 所有」이고, 이에는 「國家的 所有」와 「協同組合的 所有」(코르호즈 등의 소유) 그리고 「社會團體所有」(노동조합, 공산당 등의 소유)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國家的 所有」라 함은 「全人民的 所有」를 의미하고, 가장 고차적인 소유형태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 외에 개인적 소유도 인정되었지만, 개인소유의 대상은 근로수입으로 취득한 消費財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결국 자본주의적 소유의 기초인 토지와 건물 즉 부동산에 관한 소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가정부업경영을 위한 생산재의 소유는 인정되었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을 수반하지 않는 개인(가족)경영은 인정되었다.

페레스트로이카 前半期라 할 수 있는 1985~1989년 사이에는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개선을 도모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를 유지하면서 그 집권적·관료주의적인 國家的 所有制度를 분권화함과 동시에 소유형태를 다양화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예컨대, 1986년에는 個人經營法을 제정하였고(개인이 소유하는 생산·서비스수단을 사용한 영업을 인정하였지만, 노동자의 고용은 금지하였고 부업으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였다), 1987년에는 國有企業法을 제정하였으며(국유기업을 완전 독립채산제로 전환하였다), 1988년에는 協同組合法을 제정하였다(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빌어 私企業의 설립을 인정함으로써 레스토랑 등의 서비스부문이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1989년에는 아ренда(임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기업의 노동집단에게 국유기업을 임대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後半期라고 할 수 있는 1990~1991년에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89년 가을 베르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구권에서 공산당정권이 붕괴하는 격동기를 맞이하여, 소비에트聯邦에서도 1990년 3월 헌법개정을 통하여 共產黨의 指導性을 인정하는 헌법조항이 삭제되고, 소비에트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는 권력분립제를 채택함으로써 대통령제를 채용함과 동시에 「社會主義的 所有」라는 용어도 삭제되어 「市民所有」라는 표

현으로 사실상 『私的 所有』를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1990년 3월 헌법개정을 통하여 「권력관계」와 「소유관계」 양방향에서 사회주의원칙을 포기함과 동시에 체제전환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1990년 3월 소비에트聯邦의 所有法이 제정되어 『市民所有』를 인정하였지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데 그쳤다. 즉 생산수단에 대한 『市民所有』를 승인하고 노동자의 고용을 사실상 인정하였지만, 착취를 허용하지 않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 12월에 제정된 러시아공화국 所有法의 방향은 『私的 所有』라는 용어를 정면에서 인정하고 착취불허용이라는 조건을 부가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所有法에서는 「소유권자는 자기재량에 따라 자기에게 속한 재산을 점유, 이용 및 처분한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라는 표현이 “자기재량에 따라” 라는 표현으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소비에트·러시아의 私的 所有(市民所有)概念은 드디어 근대적 표현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市民所有』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소유형태 중의 하나로서 용인된 것에 지나지 않았고 생산수단의 대부분은 아직 『國家所有』에 속한 채 지속되었다. 그 후 1991년 7월에는 소비에트聯邦과 러시아공화국의 私有化法이 계속적으로 제정되어 국유기업의 사유화가 진행되었고, 1991년 8월 쿠데타 미수사건을 거쳐 같은 해 12월에는 드디어 소비에트聯邦이 해체됨으로써 15개 독립국가로 분해되었고, 현재 러시아聯邦은 12개 독립국가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법제적인 면에서 『私有』概念이 재생되게 된 것은 1990년 12월의 러시아공화국 소유법이 제정된 데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소비에트聯邦의 所有法과 러시아의 所有法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었을 때였다. 그러므로, 사유제도의 도입에 반대입장을 지녔던 자들은, 위와 같은 러시아 소유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대체하려는 “법적 쿠데타” 또는 러시아 소유법이 “사회주의를 폐쇄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私有』概念의 재생은 직접적인 『私有』概念의 부활이 아니라 굴절된 길을 걸어 온 『私有』概念의 재생과정이었다. 즉 페레스트로이카期는 私有財産制度를 인정하기 위한 資本主義體制에로의 전환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재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이것은 『社會主義的 所有』라는 틀 안에서 개인의 권리를 확대한다는 이른바 「마르크스의 個個人的 所有」概念의 부활 및 실현이고, 국가와 기업이 함께 기업을 소유한다는 「分割所有(二重所有)權」理論이며, 소유형태가 「多様化 中の 私的 所有」임과 동시에 一元的 國家所有制度를 「非國家化」함과 더불어 관리형태의 민주화 내지는 임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사회주의의 이념적 출발점이 재산의 『私有化』를 배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私的 所有』라는 개념을 창출·대체하면서 「市民所有」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集團所有」概念을 창출하였다. 「集團所有」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집단기업·아렌다기업·협동조합기업 등을 들 수 있지만, 株式會社制度의 경우 私企業으로서의 企業主體性을 인정하는 논리를 전개한 것은 아니고 集團的 所有形態로서의 기업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결국 「社會主義的 所有」의 한 형태로서 그 地位를 인정하게 되었다. 더욱이, 토지에 대한 사유화는 강한 저항에 부딪혀, 이를 「相續할 수 있는 終身占有權」이라는 過渡期的인 權利概念을 창설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비에트聯邦 및 러시아聯邦에 있어서의 「私有」概念의 재생은 직접적 또는 돌연적으로 표출된 현상이 아니고, 과도기적 개념장치를 갖추면서 「私的 所有」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1991년말 소비에트聯邦이 해체되면서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난 후에는 “私有”와 “社會主義”의 兩立이라는 고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法理的 矛盾 속에서 갈등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2) 러시아聯邦民法上の 所有權

러시아聯邦憲法 제8조에서는 「러시아연방에서는 경제권의 통일, 상품

서비스 및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 경쟁의 보호,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사유, 국유, 자치체소유와 그 밖의 소유형태를 평등하게 승인하고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에서는 「러시아연방에서 토지와 천연자원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의 생활과 활동의 기반으로 이용하고 보호한다. 토지와 천연자원은 사유, 국유, 자치체소유와 그 밖의 소유형태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聯邦民法 제212조 제1항에서도 「러시아연방에서는 개인, 국가, 자치체 기타의 주체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재산은 개인, 법인, 연방 그리고 연방의 기관과 자치체에게 귀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산권 주체의 다원화를 기함과 동시에 개인의 사유화도 함께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경향은 개인과 법인뿐만 아니라 자치체 및 연방 그리고 연방의 기관에게도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소유형태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고, 個人에게도 所有權을 인정한다는 것은 페레스트로이카 前期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多樣化 중의 私的 所有」라는 이념을 설정함으로써 私有化를 합법화하는 一種의 妥協의 產物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토지에 대하여도 러시아聯邦民法 제260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하여 필지단위(land parcel)로 소유하는 사람은, 당해 토지가 법률상 거래로부터 배제 또는 제한되어 있지 않은 한, 매매, 증여, 담보, 임대(lease)할 수 있고 기타의 방법(제129조)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토지에 대한 사적 권리의 객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61조 제1항에서는 「토지의 필지에 따른 경계는, 토지에 대한 권원과 토지보유권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소유권자에게 발행하는 토지등기(land legislation)에 따라, 토지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公的 登記方法에 의한 公示方法을 채용하고 있다.

(3) 所有權變動

러시아聯邦民法 제223조 제1항에서는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한, 계약에 따라 동산의 취득자는 인도(引渡)받은 때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유권의 (권리)변동이 국가등기에 의할 경우,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유권은 등기한 때로부터 취득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4조에서는, 「동산의 인도의 경우에는 소비자(매수인)에게, 그리고 인도의무 없이 송부하는 경우에는 운송업자나 우편기관에게 인도함으로써 소유권은 이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引渡主義, 送付債務), 또한 「동산은 취득자 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실제로 점유한 때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簡易引渡 또는 占有改定), 실질적으로 권한있는 자의 점유상태에 도달하면 동산의 소유권은 이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당사자가 서명한 讓渡證書(deed of conveyance) 또는 기타의 占有移轉證明書(transfer certificate)를 받아야 한다(제556조)(不動產物權變動을 表彰하는 證書의 交付-物權變動을 표시하기 위한 證書의 交付).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同時履行의 抗辯權), 매도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경우 매수인은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履行強制),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도 있다(제398조, 제463조 제2항).

결국, 이와 같은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경우 不動產買賣契約, 所有權移轉登記, 占有移轉, 讓渡證書의 交付 등 4단계의 所有權移轉過程을 규정하고 있고, 동산의 경우에는 引渡를 權利變動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不動產買賣의 경우에는 移轉登記뿐만 아니라 占有移轉 및 讓渡證書의 交付 그리고 動產買賣의 경우에는 引渡라는 公示方法을 요구하고 있고, 送付債務의 경우까지 규정하여 物權變動의 時期

및 債務履行方法까지 규정하고 있다.

(4) 物權的 請求權

所有權者에게는 不法占有者에 대한 回復請求權(claim for recovery of property from another's unlawful possession : 제301조), 盜品이나 遺失物에 대하여 그 소유자는 취득자에게 신의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laim for recovery of property from acquirer in good faith : 제302조), 不法占有者에 대한 回復請求時의 清算(settlements at recovery of property from unlawful possession : 제303조) 그리고 占有의 侵奪을 제외한 기타의 妨害에 대한 豫防 및 排除請求權(protection of owner's rights against violation not involving deprivation of possession : 제304조)을 규정하여, 이른바 物權的 請求權 및 物權侵奪에 대한 回復請求權을 인정하고 있다.

2) 契約自由의 原則과 國家의 介入

(1) 當事者意思의 尊重과 契約自由의 原則

소비에트聯邦民事基本法과 비교할 때, 러시아聯邦民法典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計劃”과 “契約”의 연계성을 풀었다는 점이다. 과거 국영기업간의 거래관계는 국가 계획당국의 정책(계획)에 따라 행하여졌고, 이 경우 거래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계약(계획계약)은 계획에 합치하지 않으면 무효일 뿐만 아니라 민법상 효력을 지니지 못하였다. 물론 당시의 거래관계가 모두 계획에 따라 규제된 것은 아니었지만, 계획경제 이외의 거래관계에 대한 범위가 그렇게 폭넓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계획계약이 가지는 경제적, 법적 의미는 대단히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聯邦民法典에서는 과거의 계획화 경제행위 기타 행정행위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부과되었던 外的 意思에는 구속받지 않고,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경제행위가 보장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가장 중시하는 이른바 『契約自由의 原

則』이 러시아聯邦民法典의 基底를 이루게 되었다. 민법 제1조에서 당사자평등의 원칙, 소유권보호, 계약의 자유, 전단적 간섭으로부터의 독립, 권리행사의 무제약성, 권리침해에 대한 배상보장과 절차의 적법성 보호 등을 규정한 것은 私人的 意思를 존중함과 동시에 계약자유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價格決定의 自由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중시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가격통제를 들 수 있다. 러시아聯邦民法典에서는 제424조 제1항에서 「합의의 이행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가격결정의 자유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는 있다. 즉 민법 제424조 후문에서 「교통요금, 상장가격, 기초환율 등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가격을 결정하거나 규제한다」고 규정하여, 공정가격 또는 조정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국가규제의 대상인 상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만 의존하지는 않고, 반독점감시기관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에 관한 계약조항의 수정을 관련 경제주체에게 명할 수 있고, 매수인은 그와 같은 명령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 줄 것을 중재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제425/426조 참조).

이와 같은 가격자유화는 1992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격규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결정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聯邦民法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한 가격결정을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교통요금, 상장가격, 기초환율 등의 공공적 성격이 강한 부문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공정가격이나 조정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려할 점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상장가격의 경우는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의미를 좀더 명확히 파악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締約強制(國家의 介入)

국가가 계약의 체결에 개입하는 예는 비단 가격결정의 경우만은 아니다. 예컨대, 재산의 양도(conveyance of property), 생산물의 이행(performance of works), 서비스의 제공(rendering of services) 등에 대한 예약(preliminary agreement)(제429조), 공매에 대한 공매계약(agreement at public sale)(제447조), 국가가 계약당사자인 경우의 국가납입계약(state contract)(제527조)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하므로 인하여 체결의 자유가 제한된다. 여기에서 공공계약(public agreement)이라 함은 소매상업, 공공수송기관에 의한 운송, 통신서비스, 에너지공급, 의료서비스, 호텔영업 등 영리단체가 계약의 일방이 되는 경우와 상품, 노동, 서비스의 소비자(이용자)가 타방 계약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경우를 말한다(제426조). 이와 같은 공공계약의 경우, 영리단체가 당해 상품 등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제426조 제3항). 그리고, 법률이 정한 경우, 러시아연방정부는 공공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하여 당사자를 기속한다(제426조 제4항). 이러한 규정은 공공계약의 구속력을 연방법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에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모범계약 model terms and conditions of agreement, 제427조). 이것은 공공계약이 소비자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소비자의 권리와 법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필요성에 따라 유연한 계약조건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자본주의 법체제에서 볼 수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제도와 그 목적을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계약에서 특정인을 우대해서는 안되며(민법 제426조 제1항 후문),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계약의 조항은 모든 소비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426조 제2항). 또한 위와 같은 조항에 위반한 공공계약의 기

한이나 조건은 무효라고 규정하여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고(민법 제 426조 제5항), 이와 같은 규정들은 수혜평등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多數의 任意規定 條項

국가가 공공계약에 개입하는 경우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 인정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러시아민법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임의규정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비교적으로 본다면, 한국 민법의 경우 계약법 조항이 200여개 조문임에 비하여 러시아 聯邦民法의 경우는 650여개 조문에 달한다. 이와 같이 많은 임의규정을 과연 민법전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임의규정은 실제 거래관계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민법규정의 無意味化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이와 같은 任意規定의 多寡現象은 민법제정에 대한 입법정책적 고려가 내재되어있기 때문에, 비교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네덜란드 민법의 경우는 契約各則에서 기본적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소수의 조문만을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임의규정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민법의 경우 입법자들은 계약당사자들에게 입법자가 임의규정이라는 형태로 조언할 필요는 없다는 사고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고와 비교하여 본다면, 러시아聯邦民法典에서는 임의규정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들에게 많은 조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경제원리에 바탕을 두고 행정적 규제라는 수단을 취하면서 계약자유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한편 상세한 법적(행정적) 규제를 취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자유의 원리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 통일적인 러시아연방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임의규정이라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거래법분야의 통일적인 중앙집권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

도 있다. 결국, 임의규정을 통한 비행정규제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자유의 원칙을 더욱더 공고히 확립할 수 있다는 사고와 러시아시장의 통일적인 거래법규의 정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법은 대단히 유효한 수단이라는 사고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 模範契約

민법 제427조 제1항에서는 「여러 가지 계약기한과 조건은 계약의 유형이나 公刊된 계약문서에 규정된 모범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模範契約(model terms and conditions of agreement)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범계약 또는 모델계약에 국가가 관여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규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는 각종의 업계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한 모범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러시아연방의 경우에도 1980년대말까지 각종의 도급계약, 기본건설도급계약, 화물운송계약 등에서 많은 모범계약 또는 모델계약이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계약에 대한 개입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연방민법에서는 제427조 제2항에서 「계약에서 모범계약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모범계약은 제5조 및 제42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상거래관습((usage and customs of business commerce)으로서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모범계약을 국가개입수단으로서의 기능에 한정하지 않고 契約에 대한 補充的 解釋根據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賣買契約의 特殊類型

대륙법계의 민법에서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물 또는 유형등을 구별하지 않고 통일적인 매매법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이와 같은 입법태도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매매유형을 혼합계약 또는 무명계

약이라는 이름으로 해결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 연방민법에서도 이른바 혼합계약 또는 무명계약을 인정하고 있다(제421조 제2/3항). 그런데, 러시아聯邦民法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일반 매매규정 이외에도 몇 가지의 특수한 매매유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첫째 小賣契約(retail purchase and sale)의 경우이다(제492조 이하). 소매계약이라 함은 개인, 가족, 가게 기타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물품을 기업으로서 판매하는 자(the seller who carries on entrepreneurial activity)가 매매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와 같은 소매계약의 경우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furnishing information about goods to buyer)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매도인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제495조), 비식료품으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제502조), 이른바 소비자보호법적 조항을 병행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物品供給契約(delivery of goods)의 경우이다. 소매계약이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물품공급계약은 기업이 기업활동으로서 물품 또는 개인·가정용품이 아닌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를 말한다(제506조). 따라서 물품공급의 주체는 기업가가 대부분이다. 사회주의시대에는 물품공급의 주체가 사회주의조직체였기 때문에 사적인 계약주체와는 그 법적 성격이 분명히 구별되었다. 또한 물품공급의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양 당사자가 국영기업인 경우에는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중재절차에 따라 처리하였다. 그러나 러시아聯邦民法에서는 물품공급계약도 엄연한 매매계약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國家需要에 대한 物品供給契約(delivery of goods for state needs)의 경우이다. 일반 물품공급계약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단순한 매매계약의 한 類型으로 규정하면서도, 국가수요에 대한 물품공급계약

의 경우는 국가의 개입을 당연시하는 특별한 국가계약(state contract)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25조 이하). 아울러 러시아聯邦에서는 1994년 12월 2일 「국가적 필수농산물·원료·식료품매수납입법」, 1994년 12월 13일 「국가적 필수품납입법」 그리고 1994년 12월 29일 「국가적 원료비축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국가적 수요에 따른 계약의 경우는 계약자유의 원리에 대한 예외로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25조 제2항에서 국가적 수요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에 대해서는,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공급계약에 관한 규정(제506조 내지 제523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물품공급계약의 경우도 민법상의 계약법리에 따르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물품공급계약에 따르도록 규정한 입법태도는 「국가계약」에 대한 법리를 「민사계약」의 원리와 접합시키려는 노력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사기본법인 민법전에서 이와 같은 국가계약에 속하는 규정을 둔 것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체계와 현실적 필요성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과도기적 입법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買受豫約(contracting)의 경우이다(제535조 이하 참조). 매수계약의 경우는 코르호즈체제하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녔던 계약의 유형으로서, 특히 농산물의 매수를 예약(농산물생산자에게 의무부과)함으로써 인민의 기초생활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고려한다면, 현행 러시아 연방민법전에서 굳이 독립적인 매매계약의 유형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가에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매수예약도 물품공급계약의 한 유형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농산물에 대한 매수예약(계약)의 유형은 일반기업의 활동과는 달리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농산물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고 매수인에게 통상의 매매보다 무거운 책임을 인정하고(제536조), 농산물의 생산자에게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채무불이행책임을 부과하고 있다(제538조).

(7) 不動產賣買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매매 계약 유형의 하나이다. 다만,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도 주택에 대해서는 매매행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러시아공화국 민법전에도 수개의 조문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러시아聯邦民法典에서는 시장경제체제를 취하면서 새로운 거래유형으로 등장한 부동산거래에 대응하기 위하여 규정한 전형계약이 바로 부동산매매계약이다.

일반계약의 경우에는 폭넓게 不要式主義를 취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는 서면에 의한 계약 즉 요식행위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그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 1964년의 러시아공화국민법전 제239조에서는 부동산(부동산이라고 하여도 토지는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주택을 의미한다)매매의 경우에는 공증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러시아聯邦民法典에서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공증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러시아聯邦民法에서는 부동산매매의 경우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이라는 요식행위를 요구하지만, 공증증서의 작성이라는 공적확인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V. 맺는 말

러시아聯邦民法은 1994년 제1부 그리고 1995년 제2부가 제정되었다. 제1부와 제2부의 구별은 민법영역별 구별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제정단계별 구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부와 제2부 민법전만으로는 민법중 재산편으로서도 아직 미완성의 민법전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제1부와 제2부에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 국가의 민법전이 미완성인 채 공포되는 예는 찾아

보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러시아의 페레스트로이카期에 체제의 전환이라는 커다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 특히 민사법 중 계약법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또한 러시아로서는 1994년과 1995년 제1단계 및 제2단계로 나누어 민법을 제정·공포하였지만, 최근 각국의 민법개정 움직임을 고려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민법의 개정이라는 과제에 직면할 것이고, 이와 같은 움직임은 이미 러시아연방민법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과도기적 민법이라는 속성에 비추어 본다면 더욱 새로운 개정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私的 所有와 契約自由를 인정하면서 國家的 需要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 내지 여지를 남겨두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본다면, 私的 所有와 契約自由를 인정하면서 國家需要에 따른 契約法의 修正 및 消費者保護의 길을 찾아온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도 사적 자율성과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民法的 基本法理는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가 과도기적 민법체제를 취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개입 없는 사적 자치의 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데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 최근 러시아의 경제활동의 활성화 현상 그리고 자본주의 물결은 필연적으로 경제행위의 다양화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러시아연방민법에서 국가개입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일정한 카테고리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할 시기가 가까운 장래에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러시아연방민법을 개관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러시아聯邦民法은, 다른 사회주의국가와는 달리, 일찍이 西歐法에 대하여 매력을 느껴왔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겪지는 않았다. 다만, 사회주의적 소유개념을 손에서 놓치지 않으려는 鄉愁가 민법의 발전을 低速化시켰다고 평가하여도 좋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와 같은 思考의 葛藤은 사회주의국가들이 겪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비교법적 측면에서 볼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橫軸에 속하는 西洋法과 東洋法 사이의 갈등은, 최소한 基本思考的 側面에서는 커다란 葛藤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縱軸의 입장 즉 歷史的 變化의 立場에서는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85년 이후 매년 새로운 所有法을 제정하여 온 과정을 볼 때 미루어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이와 같은 縱軸 즉 歷史的 變化는 러시아연방만이 겪고 있는 현상은 아니고 자본주의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하여 온 국가에서도 새로운 법체제 즉 민법(계약형)과 사회보장법(사회복지형)의 공존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경우 그 대응 능력 및 적응력이 오히려 강할 것으로 사료되어 러시아연방민법의 장래를 낙관적으로 평가하여도 좋을 것이다.

셋째, 현행 러시아연방민법은 그 체계적인 면에서 판덱텐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판덱텐시스템의 장점은 법규가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러시아연방민법의 경우, 특히 계약법영역에서, 체제상의 혼란이 있다는 점을 솔직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는 개인과 법인이라는 단순한 거래주체만을 상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러시아연방민법에서는 권리(거래)주체가 다양하다는 점과 계약법에서조차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래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거래관계에서, 러시아연방민법은 외국인들이 기피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재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논문주제검색키워드 : 러시아(Russian Federation, RF), 민법(civil code), 러시아연방민법(RF Civil Code), 사유(ownership), 시민소유(civil ownership), 사회주의적 소유(ownership of socialism), 국가적 소유(ownership of state), 협동조합적 소유(ownership of partnership), 집단소유(joint ownership), 모범계약(model agreement), 소매계약 소매(retail purchase and sale), 물품공급계약 물품공급(delivery of goods), 국가계약(delivery of goods for state needs), 매수계약(contracting), 부동산매매(sale of real estate), 기업매매(sale of enterprise)

<Abstract>

A Study on 1994 and 1995 RF Civil Code

Kim, Min-Kyu

The first and second part of Russian Civil Code were enacted respectively in 1994 and 1995. The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part of Civil Code is not based on its coverage but simply an enacting step. Therefore, the current Civil Code is considered incomplete, only dealing with property rights. Although it is rare that a nation's Civil Code takes effect without full coverage, it is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at Russia desperately needs the Contract Law among private laws in the process of fulfilling the missions for Perestroika.

The comparative analysis of Russian Federation Civil Code can be summarized into followings.

First, the RF Civil Code has been, unlike other socialized nations, attracted by western legal systems. Accordingly, it has not, in the process of changes from socio-economy to the capital economy, suffered from as much pains and confusions as that of other socialized nations.

Second, the conflict, though not considered immense in basic concept, between western and oriental laws experienced a big change during a short period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is phenomena can be presumed from the fact that several new property laws have been enacted since 1985.

Third, the current Civil Code adopted the Pandecten in its organization system, which has merits of systematic organization. However, the Civil Code has some confusion especially in Contract Law system, because it has too many owners in a sale of goods, and it, also, envisions the government's involvement even in the contract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ossibility that RF may provide some causes that foreigners may avoid transactions with Russian counter-parties.

Consequently, the current Civil Code is the final result of socio-reform efforts which Russia has pushed for since Soviet Federation period. Therefore, it is one of the characteristic phenomena that Russia did not experience a drastic change in its civil law system, unlike its political and power system.